

직원 임용 규정

개정 2019.05.22. 개정 2019.09.16. 개정 2021.08.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기술직·기능직 및 별정직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 ② 임시직(촉탁), 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0.07.01., 2012.05.29.>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해임·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 ②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직급의 구분)

직원의 직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7.11.28.>

제5조 (임용절차 및 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2010.07.01.>

제6조 (임용시기)

직원의 임용 시기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임용일자의 소급금지)

직원의 임용일자는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겸직금지)

직원은 본교 이외의 타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9조 (품위유지)

직원은 직위에 합당한 품위를 가지도록 하며 직계가족 중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직업에

종사함을 금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임용의 범위)

직원의 임용은 직급별 정원에 따라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신규채용의 방법)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전형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제12조 (공개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은 면접시험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행하며 방법·절차 등은 총장이 정한다.(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되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은 총장이 정한다.)<개정2010.07.01.>

제13조 (특별전형채용)

특별한 직종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전형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4조 (결격사유)

- ①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해전학원 정관 제 69조 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할 수 없다.
- ② 재직 중인 직원이 학교법인 해전학원 정관 제 69조 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5조 (임용기준)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학력을 명기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6조 (신규임용직원의 임용조건)

- ① 신규임용 직원은 임용권자와 2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용한다.
- ② 급여는 본교 직원연봉제급여규정을 참조하여 연봉제를 적용한다.<개정2021.08.26.>
- ③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한다.<개정2010.07.01.>

제16조의2 (학력 및 경력환산)

신규임용직원의 학력 및 경력환산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17.11.28.>

제17조 (신원조회)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하여는 임용을 제청하기 전에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치를 할하여야 한다.<개정 2019.05.22.>

제18조 (임용구비서류)<전문개정2021.08.26.>

신규채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① 인사기록카드 1부
- ②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③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경력증명서
- ⑤ 자격 및 면허증 사본
-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 ⑨ (보안,복무)서약서 각 1부
- ⑩ 기본증명서 1부
- ⑪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 ⑫ 채용신체검사서 1매
- ⑬ 그 밖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9조 (승진임용)

직원을 승진 임용코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거하여 심사에 의해 승진 임용한다. <개정 2019.09.16.>

제19조의 2 (승진심사) <본조신설 2019.09.16.>

-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근무평정 고순위자 순위로 승진예정 인원의 2배수에서 3배수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총장에 상신한다.
- ② 총장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천자 중 승진자를 최종 결정한다.

제20조 (승진임용 기준일)

승진임용의 기준일은 6월 말일로 한다.<개정 2019.05.22.>

제21조 (승진임용 소요 최저년수)

-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함에 있어 3년 이상 당해 직급에 재직한 자라야 한다. 다만, 조건부 임용기간 중 1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22조 (승진임용의 제한)

-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	직		18월
감	봉		12월
견책	경고		6월

 단, 동일직급에서 승진임용의 제한 요인이 2회 이상 해당자는 누적 적용한다.

<개정 2014.09.15.>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조 (호봉)<개정 2013.12.18.>

직원의 호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5.22.>

제24조 (특진 및 특별승급) <개정 2013.12.18.>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와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및 임용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25조 (전직의 요건 및 대상자 선정)

기능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근무평정 점수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용한다.<신설 2010.07.01.><개정2017.11.28.>

제26조 (전직 평정제외 대상)

평정제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07.01.>

- ① 직원근무평정규정 제12조 해당자
- ② 평정기준일 현재 복직한지 3개월 미만인 자

제27조 (전직자 선정) <삭제 2017.11.28.>

제28조 (전직자의 급여)

전직 시 직급 및 호봉은 [별표3]에 의하여 정한다.<신설 2010.07.01.><개정 2014.06.02., 2017.11.28.>

제29조 (전직자의 승진임용 소요 최저년수) <조문신설 2014.06.02.>

- ① 전직자를 승진임용함에 있어 전직 후 당해직급 3년이상 재직한 자라야 한다.
- ②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직무상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6.0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개정2010.07.01., 2013.02.06., 2017.11.28., 2019.09.16.>

직급구분	
총계	60명
일반직계	43명
2급	1명
3급	1명
4급	4명
5급	9명
6급	10명
7급	7명
8급	5명
9급	6명
기술직계	9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별정직계	1명
예비군중대장(6급대우)	1명
기능직계	7명
6등급	2명
7등급	1명
8등급	2명
9등급	2명

[별표 2] <신설 2017.11.28.>

학력 및 경력적용

1. 신규임용 직원 직급 및 호봉부여

직 종	직급	호봉	비 고
일반(기술)직	9급	1호봉	단, 대졸자(학사)는 3호봉 적용
기능직	9등급	1호봉	

※ 단, 특별·경력직 채용,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병역기간 경력적용

복무기간	경력인정	비 고
1년 미만	해당사항 없음	단, 1979년 이후 군입 대자에 대하여 적용
1년 이상 2년 미만	1호봉 가산	
2년 이상 3년 미만	2호봉 가산	

※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경력환산표

구 분	경력 사항	환산율(%)
교육기관 경력	①국·공·사립학교 교직원 정규직 경력(무기계약직 포함)	70
	②교육행정기관 공무원 경력	70
그 밖의 경력	①공무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60
	②각종 회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0
	③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	20
비 고	과거경력이 채용 직무와 유사한 직에 재직하였거나, 전력이 채용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 환산율을 최대 1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전직자 직급 및 호봉획정

1. 대상자 구분

대상자	전직 직급	비 고
기능직	일반직, 기술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2. 직급 및 호봉획정

1) 기능직

가. 직급 : 전직 직급은 전직 전과 동일 급으로 한다.

나. 호봉 : 호봉은 전직 전 호봉에서 2호봉 감하여 획정한다. 다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한다.

※ 예시 : 기능직 7등급 20호봉 → 일반직 7급 18호봉

2) 무기계약직, 계약직

가. 직급 : 전직 직급은 9급을 기준으로 하고, 본 대학 근무경력(계약직, 무기계약직)에 따라 최대 직급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근무경력에 따른 최대 직급

근무경력	최대 직급	비 고
5년 미만	9급	
5년 이상 ~ 10년 미만	8급	
10년 이상 ~ 15년 미만	7급	
15년 이상	6급 이상	

나. 호봉

① 호봉은 1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본 대학 근무경력(무기계약직)에 따라 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한다. (조교, 계약직 근무경력 인정안함)

※ 예시 : 근무경력 2년 미만 : 1호봉

근무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 : 2호봉

근무경력 3년 이상 4년 미만 : 3호봉

근무경력 4년 이상 5년 미만 : 4호봉

②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호봉을 부여 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1호)

직 원 임 용 계 약 서

학교법인 혜전학원 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신입직원을 “을”이라 하여 직원임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계약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갑) 학교법인 혜전학원 이사장

(을) 성 명 : (한자:)

소 속 : 혜전대학교 처(실,센터) 과(팀)

직 급 :

생년월일 :

제2조 (임용기간)

“을”의 임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보수)

“을”의 보수는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4조 (근무시간)

본교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계약)

“갑”과 “을”은 계약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혜전학원 정관 및 본교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 학교법인 혜전학원 이사장

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